

수출입 정보

2019.09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02. 수출입물류 동향

- 통관 부적합 식품 및 기 통관 식품 국내 유통 시 신속 회수 가능
- 부산항만공사·관세무역개발원,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MOU 맺어
- 산업부,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 열어
- 식약처, 일본産 가공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03. FTA 동향

- 산업부, 한·중미 FTA 관련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열어
- 속도 내는 한·필리핀 FTA, 벌써 세 번째 공식 협상
- 한·영 FTA 정식 서명 한·영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04. 최신 품목분류

- 부분적으로 호화된 쌀이 분류되는 호는?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5호>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54호, 2019.7.26>

□ 개정 사유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안 제4조 및 제5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 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안 제34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8)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수입식품 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안 별표 9)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관세청고시 제2019-33호, 2019.8.9>

□ 개정 사유

○ 불복결과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6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절차 마련**(§23의2,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불복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시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른 연기·중지·연장 등의 사유와 보고·승인·통지 등 세부절차* 규정

* 원산지조사·통관·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에 한정되며 관세조사와 관련된 재조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재조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반영**(별지 제19호서식)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제출받는 서약서에 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처분청의 자체판단이 곤란한 직권시정은 불복전담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개정(§14②, 별지 제3호서식)

- (변경 前) 본청 업무국 소관부서 (변경 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의무화

청구인이 자신이 제기한 불복청구를 취하할 경우 사용할 취하서 양식 신설

(별지 제20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결정 前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46③)

02. 수출입물류 동향

“통관 부적합 식품 및 기 통관 식품국내 유통 시 신속 회수 가능”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제품 국내 유통 시 신속 회수**,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 준수 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히 표기**,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 시 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반려된 수입식품과 동일한 식품을 국내에 유통하면 국내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면 식약처 검사 결과를 거쳐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반송·폐기 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사후조치 기간은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해외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0일로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 수출입물류 동향

“부산항만공사·관세무역개발원,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MOU 맺어”

부산항만공사는 8월 12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부산항 중소 수출입·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AEO 공인을 받으면 ▲물품 검사비용 축소, ▲서류 제출 생략, ▲신속 통관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금전적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이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자 AEO 컨설팅 전문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과 함께 올해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공개 모집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은 AEO 획득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인증심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도 올 8월 관세무역개발원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고, 이들 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新남방 3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한·이스라엘 FTA,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美·中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新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新남방 3개국과의 FTA 연내 타결을 강조했다. 아울러 WTO 개도국 지위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02. 수출입물류 동향

“식약처, 일본産 가공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미량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품목, 안전검사 건수 2배 이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검사 건수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8개현에서 나는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일본産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 건별로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 검출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극미량의 방사능(예 : 1Bq/kg)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 식품이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 이상 늘려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로 1kg씩 수거해 한 번 시험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별로 1kg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 횟수도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産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곳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해식품이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본産 검사강화 대상 17개 품목】

가공식품(10개 품목)	고형차, 침출차, 기타 가공품, 당류 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음료 베이스, 초콜릿 가공품, 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 천연 향신료
농산물(3개 품목)	소두구(생강과 향신료),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2개 품목)	혼합제제, 면류 첨가 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개 품목)	아연, 빌베리 추출물

03. FTA 동향

“산업부, 한·중미 FTA 관련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8월 13일 밝혔다.

한·중미 FTA는 올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8월 6일 중미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니카라과는 올 10월 1일 FTA가 발효되고, 나머지 4개국은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국가와 한·중미 FTA 발효 동향을 공유하고, 한·중미 FTA를 활용한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산업부는 양측이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미 국가 간 경제·외교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美·中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여러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올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의 신규 시장 개척 및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속도 내는 한·필리핀 FTA, 벌써 세 번째 공식 협상”

“산업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한·필리핀 FTA 제3차 공식 협상을 열었다고 밝혔다. 어느덧 세 번째 공식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 각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됐다.

양국은 오는 11월 한·ASEAN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성과 도출에 초점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와 활발히 거래하는 5대 교역국 중 하나로, 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新 남방 정책의 핵심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03. FTA 동향

“한·영 FTA 정식 서명 한·영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한·EU FTA 수준 양허 유지”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에도 한·영 양국은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런던에서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영국이 올 10월 31일부로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EU產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產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도록 해 우리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되면 2년 내에 개선 협상을 하기로 하고, 합의에 따른 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04. 최신 품목분류

“부분적으로 호화된 쌀이 분류되는 호는?”



<물품설명>

-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낱알상의 멍쌀
- 용도 : 식용
- 분류세번 : 제1006.30호 (관세율:[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처리 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결과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결과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낱알상의 멍쌀로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